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372-6666 시공 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1403호 1판 (음력 10월 27일)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아시아문화 국제사진 공모전 제3회 아시아문화 국제사진 공모전이 10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5관에서 개막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주관하며,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시아 전역에서 공모한 사진 작품 중 총 75명의 수상작 181점을 선보이며, '광장의 사진' 기획전과 '국제 포토저널리즘 포럼 작가' 초대전도 함께 진행한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광주·전남 중소기업 갈등 불가피

50인~299인 사업장 대상
1478곳 노동자 14만명
근로형태 논의도 못해 '한숨'

#. A씨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를 적용받는다는 정부 발표가 아직은 미덥지 않다. A씨는 광주지역 300인 이하 사무용품 부품 생산업체에 다닌다.

노동부가 이달 30일 끝나는 중소기업 대상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A씨가 다니는 50~299인 사업장들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됐다.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회사측은 대응 계획은 커녕, 고민도 안하는 듯한 분위기다. 일감이 몰릴 때면 철야 근무도 심심치않게 이뤄지던 기존 근무 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데, 대안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며칠씩 야근하면 연장근무 12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감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장 앞에서 노동자가 52시간을 어떻게 주장하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워라밸 삶' (일·생활 균형)을 꿈꿀 수 있을 지 A씨는 회의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적용 대상 사업장만 1478곳으로, 관련 노동자도 14만명이 넘는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정작 답답하기만 하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위법한 근로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는커녕,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주 52시간'을 넘는 기존 근로형태를 어떻게 바꿔야할 지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회사가 적지 않아서다. 정작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버텨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관행대로 이뤄졌던 초과 근무와 연장 근로를 "새해부터 바뀌었다"며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가능하냐는 목소리가 산업 현장에서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일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노동자를 둔 사업주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토록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연장근로 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기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무엇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산정하고, 어기는 회사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 목소리다. 노동자들은 "요즘같은 코로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새벽 또는 야간에 이루지는 업무를 연장근로로 봐야하는 지 등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관행적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사업장 행태를 신고할 경우 어떻게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근거 자료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아볼 데가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력 수급, 인건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전공대법·아특법은 언제…

국민의힘 거부 국회 문턱 못 넘어
5·18 관련자 보상법안도 불발
민주당 지도부 각별한 관심 필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한 5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1일 개교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안'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아특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 측 거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5월 법안'의 사정도 비슷하다.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사과'를 하고, 호남에 제2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정한 국민의힘이 광주·전남의 현안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이 추진하는 '서진정책'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민주당은 한전공대법과 아특법을 내년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한전공대법안과 아특법 등의 지역 현안 법안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과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중 사망 및 상이자에 대한 보훈보상 제외)도 각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그나마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위 기간 연장 등 강화·설훈 의원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처벌법·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현안 법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한전공대법과 아특법 등 시간을 다투는 현안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한전공대의 원활한 개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한전공대법안은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당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법의 발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조직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 지원' '사립학교 지원'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야당과의 '4+1' 공조로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모두 가져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는 추천위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지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위원 선정부터 보이콧해 추천위 구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은 7년으로 낮아졌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외지인들의 투기장 된 광주 아파트 ▶6면
북스-'안타고니즘' '테라 오스트랄리스' ▶14·15면
2020 K리그 활동량·스프린트 분석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